

프로클럽 B팀 운영 세칙



한국프로축구연맹

목 차

제1조. 목적	3
제2조. 정의	3
제3조. B팀의 K3-K4리그 가입	3
제4조. B팀의 선수 구성	3
제5조. B팀 소속 선수의 K리그 및 K3-K4리그 출전 자격 출전 자격	4
제6조. 아마추어 계약의 체결 및 출전	4
제7조. 아마추어 계약의 구분	4
제8조. 아마추어 계약의 기간	5
제9조. 아마추어 계약에 따른 연봉 및 이적료	5
제10조. B팀 코칭스태프의 구성	5
제11조. 출전선수의 구성	5
제12조. 징계	6
제13조. 기타	6
	부칙
제1조. 시행일	7

프로클럽 B팀 운영 세칙

제1조 목적

본 세칙은 한국프로축구연맹(이하 "연맹")에 소속된 프로클럽이 B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K3·K4리그에 참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K리그의 경기력 발전 및 유망 선수들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정의

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단, 다음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연맹 및 대한축구협회 규정의 용례에 따른다.

1. "프로클럽"이란 연맹의 클럽규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맹에 가입하여 K리그1 및 K리그2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클럽을 말한다.
2. "B팀"이라 함은 프로클럽이 K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별도로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K3·K4리그에 참가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선수단을 말한다.
3. "아마추어 계약"이라 함은 프로클럽이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, 해당 선수가 프로클럽의 B팀 소속으로 K3·K4리그에 출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.
 - ① 프로클럽과 프로축구선수계약 또는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
 - ② 프로클럽 산하 유소년클럽에 소속된 선수로서 준프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
 - ③ 프로클럽 산하 유소년클럽 출신으로 프로클럽으로부터 우선지명을 받은 상태에서 대학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

제3조 B팀의 K3·K4리그 가입

- ① B팀을 운영하려는 프로클럽은 「대한축구협회 K3·K4리그 운영 규정」이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B팀의 K3·K4리그 가입을 위한 신청을 하고, 대한축구협회의 참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프로클럽이 본 조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B팀의 가입신청을 할 때에는 연맹을 경유하여야 한다.
- ③ B팀을 운영하는 프로클럽은 대한축구협회가 정한 K3·K4리그 가입비와 연회비 등을 대한축구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 B팀의 선수 구성

- ① 프로클럽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를 B팀 소속 선수로 연맹에 구성할 수 있다.
 1. 프로클럽과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하여 연맹에 등록된 선수(이하 '프로선수')
 2. 프로클럽과 준프로계약을 체결하여 연맹에 등록된 선수(이하 '준프로선수')

3. 본 세칙 제6조에 따라 프로클럽과 아마추어 계약을 체결한 선수
- ② 프로클럽이 K3·K4리그에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소속 선수의 수는 외국 국적 선수를 포함하여 18명 이상, **25명 이하**로 한다. <변경 2023/02/20 개정>
- ③ 프로클럽은 4명 이하의 외국 국적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.
- ④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를 출전시킨 경우 제3항의 외국 국적 선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 1.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2. 북한 주민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
 3.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거주 동포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
 4. 그 외 대한축구협회가 정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외국 국적 선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자
- ⑤ 프로클럽은 B팀의 K3·K4리그 참가를 위하여 제4조 ②항에 따른 선수들을 시즌 시작 전 대한축구협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. 이후, 참가 신청된 명단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기일 D-2의 18:00까지 대한축구협회 리그담당부서 대회운영팀으로 변동사항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라운드 명단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 <변경 2023/02/20 개정>

제5조 B팀 소속 선수의 K리그 및 K3·K4리그 출전 자격

- ① 프로선수 또는 준프로선수는 프로클럽 소속으로 K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고, 제4조에 따라 참가신청을 완료한 선수에 한하여 K3·K4리그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K리그 경기에 출전한 적이 있는 프로선수 또는 준프로선수는 해당 시즌 K3·K4리그 정규리그 전체 경기수의 1/3 이상 출전한 경우에만 아래 각 호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.
 - 해당 시즌 K3·K4리그 챔피언십, 승격플레이오프, 승강결정전 등 정규리그 종료 후 최종 순위결정전
- ③ 아마추어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K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
제6조 아마추어 계약의 체결 및 출전

- ① 프로클럽은 아마추어 계약을 체결할 때 「대한축구협회 K3·K4리그 선수계약 세칙」을 준수하고, 대한축구협회가 제공하는 표준선수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프로클럽은 아마추어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서를 연맹에 제출하고 해당 선수를 K3·K4리그에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.

제7조 아마추어 계약의 구분

- 아마추어 계약은 프로클럽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에 따라 아래 각 호로 구분된다.
1. 연봉계약 : 프로클럽이 선수에게 연봉 또는 연봉과 수당(훈련수당, 출전수당, 승리수당 등)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
 2. 수당계약 : 프로클럽이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 수당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

제8조 아마추어 계약의 기간

- ① 연봉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계약기간은 5개월 이상으로 한다.
- ② 수당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계약기간은 5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한다. 단, 군 전역 선수의 경우 계약기간이 5개월 미만이거나 12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③ 아마추어 계약을 체결한 선수 중 국내 선수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최종 계약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.

제9조 아마추어 계약에 따른 연봉 및 이적료

- ① 연봉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연봉은 「대한축구협회 K3·K4리그 선수계약 세칙」에서 정한 최저연봉 이상으로 한다.
- ② 프로클럽이 선수에게 단일 또는 복수 경기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조건으로 하는 수당(승리수당, 출전승리수당 등)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 - 1. 프로클럽이 K리그1 소속인 경우 1회당 100만원
 - 2. 프로클럽이 K리그2 소속인 경우 1회당 50만원
- ③ 연봉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계약기간 내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프로클럽은 이적료를 청구할 수 있다. 단, 연봉계약을 체결했던 선수가 이적한 클럽에서 수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적료를 청구할 수 없다.

제10조 B팀 코칭스태프의 구성

- ① 프로클럽에 등록된 AFC B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는 해당 팀의 B팀 코칭스태프로써 K3·4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.
- ② K3·4리그 경기에 최소 2명의 지도자가 반드시 벤치에 착석해야 하며,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의 지도활동은 1명의 통역을 제외한 최대 1명만 가능하다.
- ③ 프로클럽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의무트레이너를 최소 1명 이상 5명 이하로 K3·4리그 경기에 출전시켜야 한다.

제11조 출전선수의 구성

- ① B팀 소속 선수와 지도자는 대한축구협회가 정한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K3·K4 리그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.
- ② K3·K4 리그 경기의 출전선수명단에는 선발 11명과 교체대기 7명 합계 18명의 선수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출전선수명단에는 만 21세 이하의 선수가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④ 선발 11명의 명단에는 만 23세 이하 선수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경기 종료 시까지 그 수는 유지되어야 한다. 단, 퇴장 등의 사유로 경기 중 출전 선수 수가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감소한 수에 비례하여 만 23세 이하 선수의 의무 출전 수도 감소한다. 또한, 외국 국적 선수의 경우 실제 연령에 관계없이 만 23세 이하 선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12조 징계

B팀의 선수 및 코칭스태프가 K리그1·2 또는 K3·K4리그에서 해당 리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프로연맹 및 협회 각각의 상벌규정에 의하여 제재를 받는다. 각각의 리그에서 경고 및 퇴장 등의 제재로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각 상벌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징계는 서로 다른 리그에 연계 적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리그 사무국간에 문서로 징계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3조 기타

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대한축구협회 K3·K4리그 운영 규정」과 「대한축구협회 K3·K4리그 선수계약 세칙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 시행일

1. 본 세칙은 연맹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개정내역

2021/01/18	제정
2022/01/17	개정
2023/02/20	개정

